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105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송재봉 · 김문수 · 이병진  
이재정 · 박 정 · 최혁진  
남인순 · 이수진 · 임호선  
이연희 · 김우영 · 박정현  
강준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제품인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송·배전 등 발전소비 과정에서 전력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전력안보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배터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지원,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금융 지원과 민관 투자펀드 조성, 생산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全週期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핵심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 촉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특히,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이 때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산업 불균형 완화에 기여함(안 제19조).

사. 정부는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3조).

아.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배터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특별회계의 설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세제 및 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의 조성·운영, 생산보조금 및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이와 함께 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 조성, 생산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를 도모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터리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  
· 개발 · 실증 · 설계 · 제작 · 생산 · 가공 · 공급 · 서비스하거나 사업  
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배터리 완제품

나. 양극재 · 음극재 · 전해질 · 분리막 등 배터리 관련 소재

다. 리튬 · 니켈 · 코발트 · 망간 등 배터리 소재 관련 핵심 광물

라. 배터리 관련 부품 · 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배터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 배터리의 재제조 · 재사용 · 재활용 · 유지보수 · 이력관리 등 관  
련 서비스

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용 제품

2.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또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에서 일정 기간 사용된 후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3.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란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4. “배터리클러스터”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배터리사업자”란 배터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개발,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배터리사업자와 배터리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

을 적용한다.

## 제2장 배터리산업의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터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배터리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
3. 배터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개선 방안
4. 배터리산업의 발전 기반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
6. 배터리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배터리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촉진 등 순환경제 구축 방안
10.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
11.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배터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배터리산업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배터리산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①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배터리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터리산업 관련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배터리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터리산업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7. 배터리산업 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배터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대책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배터리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배터리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이하 “정책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책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육성·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2. 배터리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3. 배터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4. 배터리산업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5.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 지원
6. 배터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배터리산업 관련 제품 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8. 배터리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9. 배터리사업자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
10.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배터리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배터리산업의 생태계 조성

제11조(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및 셀·모듈·팩 등 완제품의 제조,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응용 제품의 보급·활용 등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全週期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국산화 및 기술 자립 촉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핵심 원료

· 소재 등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 사업,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내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및 공공수요 연계 실증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산 배터리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수요와 연계하여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실증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제16조(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이전 중개, 기술평가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의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 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스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스업자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 재직자 직업교육·능력개발 등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지원
3.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유지·안정 지원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확충 지원
5.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
6. 수도권 외 지역 및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7. 배터리산업 분야별로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등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설치·운영 지원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배터리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5. 그 밖에 배터리산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배터리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제19조(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때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설치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배터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배터리산업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배터리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그 밖에 배터리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배터리클러스터에 입주한 배터리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배터리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2. 배터리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 시설·설비의 설치·구축·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3. 배터리클러스터 내 배터리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수도권 외의

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구축)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다)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배터리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 실증사업(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실증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실증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 강화)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배터리 안전·품질에 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내 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를 국제 표준과 조화

롭게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국내 배터리사업자가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및 데이터 활용·공유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효율화·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터리 관리시스템이나 그 밖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5.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활용하는 배터리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배터리의 성능, 안전성, 잔존가치 평가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사업의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해외시장 진출 및 공급망 안정화

제24조(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2. 수출 상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3.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5.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자원외교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해외 탐사·개발·생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전략적 비축과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제협력 및 기술 보호)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내 배터리사업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제 표준의 대응 및 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국제협력 및 기술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배터리산업의 지원

제27조(배터리산업특별회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배터리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배터리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특별회계 보유재산의 매각 또는 운용 수입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터리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2. 배터리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3.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배터리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6.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 확산을 위한 사업
7. 배터리산업 생산보조금 지원사업
8.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특별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⑤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2. 제20조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사업
3.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

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2. 제20조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사업
3.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 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세제 지원)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시설 투자 확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시설투자, 수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나 대환, 보증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 지원의 대상,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민관 투자펀드 조성) ①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 투자펀드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 투자펀드의 조성·운영 방식과 지원대상 사업, 투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생산보조금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셀 등 배터리 제조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생산비용
2. 핵심 원료·소재의 국산화 또는 대외 의존도 축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생산비용
3.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고정비용 또는 환경설비 운영비용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생산비용
4.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의 내재화 또는 국내 생산 전환 시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
5. 배터리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 및 관련 인증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생산보조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기요금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배터리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 또는 제품의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가동할 것
2. 생산비용에서 산업용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기간,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등

제3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사업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내용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배터리사업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그 밖에 배터리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정책지원단 또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 제34조제3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